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4. 3. 12.
도시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**안 건 명**: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

○ **발 의 자**: 이영빈 의원 등 8명(이진환, 임미연, 고명욱, 정순옥, 남현주, 김장관, 권숙자)

○ **발의일자**: 2024. 2. 28.

○ **회부일자**: 2024. 2. 28.

○ **상정 및 의결**: 제30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(2024. 3. 12.)

2. 제안이유

○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
○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 ~ 제4조)

○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○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(안 제6조 ~ 제7조)

○ 수당 등 지급 및 보고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제9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

○ 비용추계: 비대상

○ 입법예고(2024. 2. 28. ~ 3. 8.)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.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사후관리계획 수립, 평가단의 구성·기능·운영과 사후관리계획의 의회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죽전 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사업 등 3개 사업 529억원으로 2024년 말 모두 완료 예정임에 따라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, 사업완료 후에도 도시발전을 유지하고 그 효과를 지속·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